

폰트 프로그램의 PDF 탑재 관련 저작권법 상 쟁점



법무법인 혁신
I N N O L E G A L

박지환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폰트프로그램의 성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폰트프로그램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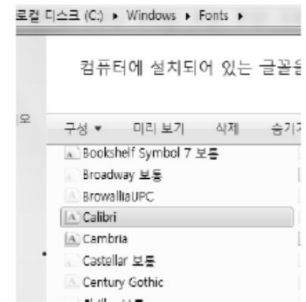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

폰트 도안

폰트 파일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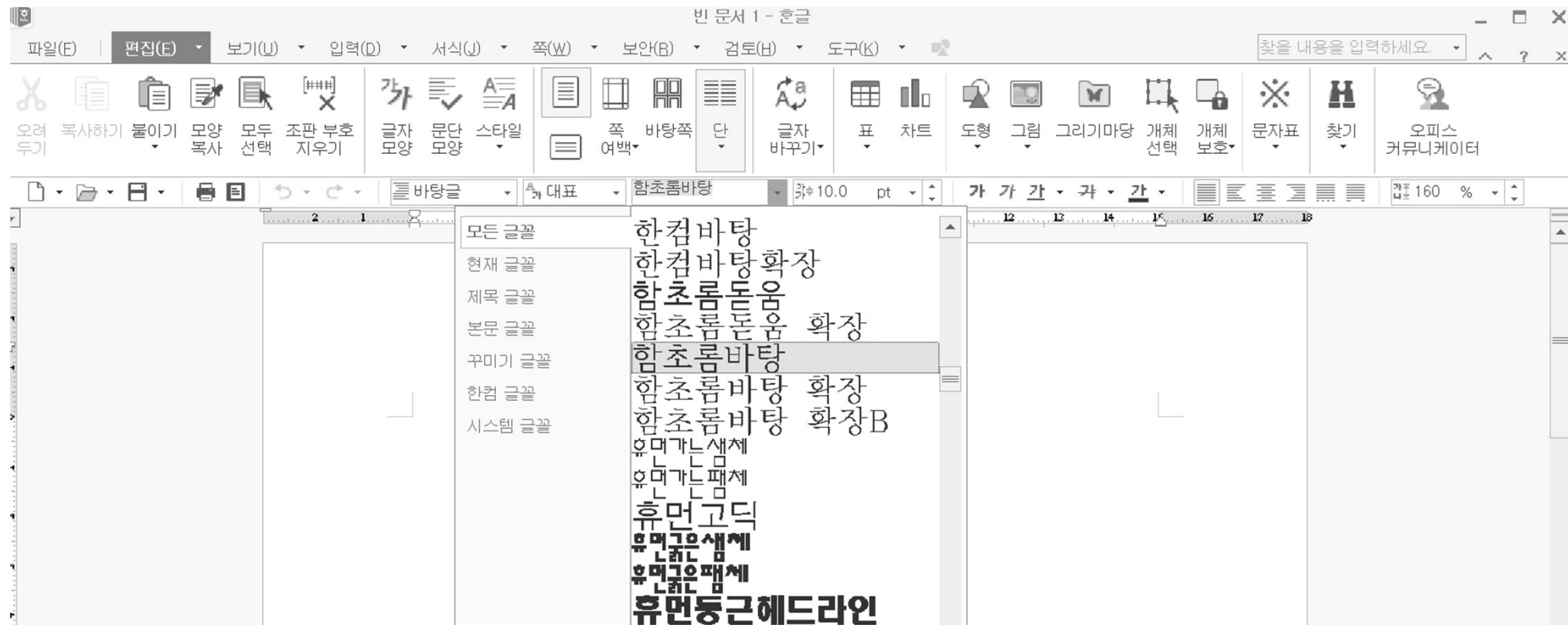
저작물성 부정(보호대상 아님)

⇒ 글자의 모양(글자체)으로 알려진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저작물성 긍정(보호대상임)

⇒ PC의 fonts(c:\windows\fonts) 폴더에 "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임

폰트프로그램의 성격



폰트프로그램의 성격

폰트는 별도의 프로그램
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어
렵다.

-> **인식의 전환,
주의 요망**

☆ a옛날목욕탕 3종	비상업용	설치
☆ a파도소리 1종	비상업용	설치완료
☆ a대한닉우스 2종	비상업용	설치
☆ a블랙 2종	비상업용	설치
☆ a가을소풍 2종	비상업용	설치
☆ a아간열차 2종	비상업용	설치
☆ a시네마 3종 [한자]	비상업용	설치
☆ a피오피네모 2종	비상업용	설치
☆ a가을운동회 2종	비상업용	설치
☆ a장미다방 1종	비상업용	설치
☆ a펜글씨 2종 [한자]	비상업용	설치

파도소리

**잔잔한 파도소리가 내 맘에 가득 차
산뜻함이 바람에 묻어와 간지럽히네
하얀 모래 위에 뛰놀던 추억을 떠올리며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바다소리**

Family : 파도소리 Spec : 영문커닝

Idea : 세로획과 가로획의 굵기차이로 강인한 느낌을 표현한 서체로 짧은시간에 집중도를 높일수 있는 제목용 서체이다. 곡선부분에 간결한 포인트로 세련미를 높였으며 허단의 물결모양과 기출림을 주어 리듬감을 살렸다.

☆파도소리 1종을 다운로드 설치하고 인식시키

폰트통 사전전 계약

본 소프트웨어와 이를 통해 제공하는 폰트 제품은 귀하의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 본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설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사용 권한】

(주)아시아소프트는 본 소프트웨어와 (이하 폰트통) 폰트 통 전용 서버에서 (이하 폰트서버) 제공하는 아시아폰트를 비상업적 용도로 개인사용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 공익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에서의 사용은 (주)아시아소프트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권리라 함은 법적권리 내의 사용권

폰트통 공지사항

- 2014.04.11 파도소리 1종을 추가했습니다.
- 2014.03.21 가을운동회 2종을 추가했습니다.
- 2014.03.21 가을소풍 2종을 추가했습니다.
- 2014.02.17 꿀통로봇 1종을 추가했습니다.

폰트통 사전 명키 안내

①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아시아폰트는 아래의 제한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대상	개인 사용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대한민국 국군 (육군, 해군, 공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
사용 용도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무료 사용
주의 사항	폰트파일을 따로 공유, 배포하거나 수정을 금지합니다 영리 목적의 기업과 개인은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② 사용권 계약의 범위에 없는 CI, BI (상호, 브랜드명, 상품명, 마크) eBook, eLearning 방송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영상 (TV-CF, 영화, 자막, 동영상), 간판 (프랜차이즈 옥외광고), 전광판,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임베이딩, 디바이스 장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2차 제작 결과를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제공되는 폰트는 질적 향상이나 기능 보완으로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에 동의

트루타입 설치

이용과 사용의 차이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 :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당연히 허용되는 형태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조건 위반 : 저작권 침해는 아님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사용조건 위반 : 채무불이행 우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
결).”

구체적 사례

PDF

- 주장 : PDF 변환 후 게시하는 것은 별도의
이용허락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없
으면 불가능하다.

1.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16,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2016) 초록에서 일부 발췌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만 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원적 보호 형태로 인해, 글자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PDF 문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인 글자체가 사용된 산출물에 불과하고, 폰트내장형 PDF 문서에 폰트파일이 일부 복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 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PDF 문서에 폰트가 복제되거나 인터넷에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송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폰트파일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산출물의 이용 가능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2. 서체도안(폰트)과 서체파일(폰트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상 (대한변협신문, 김태경 변호사, 2018)에서 일부 발췌

“서체내장형 PDF 문서의 경우에는 PDF 문서에 해당 서체파일 자체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복제, 전송만 하더라도 서체파일의 복제, 전송도 함께 일어나 역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PDF 문서에 내장된 서체파일은 문서와 분리해 독립적인 형태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나 전송과는 다른 점이 있고, PDF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단순히 문서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지 서체파일을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또는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정이용이란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하게 고지시 사용허락계약 체결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사용허락계약에 따라 복제시 사용간 계약 위반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약관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며 해당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만 판단하겠다고 명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불분명하게 고지시 사용허락계약 체결 없음

상업적 사용 불가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어

또한 네이버 무료 폰트 게시판을 통해 다소 불분명한 형태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에게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허락계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서체가 네이버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료로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ttps://www.opennet.or.kr/20550> (판결문 원문)

비영리법인의 유료폰트 사용 - 공정이용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유료 폰트 (무료) 사용은 "교육적 및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이라고 항변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무료 폰트의 비영리적, 일회적 사용은 전체 폰트 프로그램의 글자 조합 중 극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폰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유료폰트 사용 - 공정이용에 해당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의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향상 및 영양 증진과 가정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교육 프로그램 활동은 비영리적, 비상업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사건 홍보지는 피고 복지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일정, 참가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위 행사의 일정, 참가대상, 참가신청 방법 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지는 1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홍보지의 홍보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홍보지를 여러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지의 내용상 게시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https://www.opennet.or.kr/21054> (판결문 원문)

감사합니다 - Q&A

jpark@innolegal.kr
